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재외국민
 - 나. 외국인
 -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법령상 지원자격 구분에 따른 세부 지원자격의 예

모집인원	법령 구분	세부 지원자격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인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함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전형일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를 선발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정한 각 모집시기의 전형일정을 준수하여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운영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전형방법의 사전예고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9월 입학자(제6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를 선발할 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사전예고 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되, 전형일정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정한 각 모집기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음. 단 9월 입학자 선발 시, 다음 해 3월 입학자 선발과 동일한 기간에 모집할 수 없음
-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제6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외)

전형방법

- 전형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함
- 대학별로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함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 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 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 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G2-2로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기타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대학에서 판단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대학은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 받아야 하며, 해외발급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대학은 부모 및 학생 출입국관련서류, 해외근무자 재직관련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증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대학 간 제출서류의 위·변조 적발 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 후에라도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원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 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자격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것을 권장함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제출서류

※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

구분	제출 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 개 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교육부 대입정책과-1083 (2020. 02. 20.)